

파독 광부·간호사·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
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파독 광부·간호사·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의 방법 등)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은 정보통신망 운영, 정보제공·교육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, 상담 등으로 할 수 있다.

제3조(의견청취)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·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② 법 제4조제1항의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 심사 등을 위해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경비의 보조) 법 제5조에 따라 국가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파독 광부·간호사·간호조무사 관련 조사·연구·교육·홍보 또는

기념사업 등의 수행을 설립목적 또는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관련 사업 수행실적이 있을 것

2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

가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
나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

다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

라.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

제5조(업무의 위탁)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한국산업인력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.

1. 법 제3조제1항 지원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
2. 법 제4조제1항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
3. 법 제5조의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

제6조(관계기관의 협조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 내지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·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7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고용노동부장관(법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무
2. 법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 수행에 관한 사무
3. 법 제5조에 따른 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무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